



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—2025년—



평안노인주간보호센터

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1조 (계약기간)

-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 다만,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
-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.
-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
-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.
 1.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
 2.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
- ⑤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(신설 2018.06.12.)

제2조 (계약 목적)

- ① 센터와 수급자(이용자),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 -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‘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’ (이하 “계약” 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 - ③ 센터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,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, 계약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.

1. 계약 당사자
2. 계약기간
3.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 등
4.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

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(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)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

<신설 2019.6.12.>

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표준장기이용계획서,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. <신설 2019.6.12.>

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, 비급여 비용은 원장이 정한다.

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.

③ 이용료는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산정 한다. 『첨부1』

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.

⑤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.

1. 식재료비

.비급여 항목 및 비용 : 중·석식비(1인/1일/2식 5,000원), 간식비(1인/1일/2회 : 1,000원)

2. 이·미용비

3. 기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

⑥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.

⑦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제4 (급여비용 청구)

- ① 급여비용은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 수가를 적용한다.
- ② 시설 이용료는 공단에 청구하는 급여 부분과 계약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부분인 본인 부담금으로 구분한다.
- ③ 시설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 날 정산하여 주간보호는 6일~10일까지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.
- ④ 시설은 계약자에게 매월 12일 까지 장기요양 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통보한다.
- ⑤ 계약자는 장기요양 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확인하고, 비급여인 본인 부담금을 20일까지 시설에 납부 하여야 한다.
- ⑥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.
- ⑦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(장기요양급여의 범위)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.

제5조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 의 권리)

-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계약, 센터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 1.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2.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 3.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
 4.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5.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 6.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7. 이용자가 청결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8.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
 9.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,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10.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,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
제6조 (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 의 의무)

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, 센터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
1. 신원 인수인은 입소자 건강·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2. 본인부담금 및 식 재료비,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3.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
5.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제7조 (계약시 안내 및 동의)

1. 계약 내용 설명에 관한 사항
- 2.미이용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
- 3.수급자 사진 촬영에 관한 사항
- 4.이성 케어에 관한 사항
- 5.분실물 책임에 관한 사항
- 6.응급상황 이송에 관한 사항
- 7.병원동행에 관한 설명 사항
- 8.응급사고 발생 위험에 관한 사항
- 9.낙상사고 발생 위험에 관한 사항
- 10.급여제공계획서 설명 및 서명에 관한 사항
- 11.이동서비스 수칙 제공에 관한 사항

*표준약관 19조(기타)의 < 확인 및 동의 > 참조

제8조 (계약해지 및 해제)

-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,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 해야 한다.
- ②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1.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
 2.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
 3.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(3회 이상)
 4.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
 5. 이용자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
 6.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 7.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
『첨부1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제공 및 부담내역(2025. 1. 1. 장기요양급여비용고시 기준)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	40,650	37,630	34,740	33,160	31,580	31,580
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	54,490	50,470	46,590	45,000	43,400	43,400
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	67,770	62,780	57,960	56,380	54,780	54,780
10시간 이상 ~ 13시간 미만	74,660	69,160	63,900	62,290	60,710	60,710
13시간 이상	80,060	74,170	68,520	66,930	65,350	65,350
월 한도액	2,306,400	2,083,400	1,485,700	1,370,600	1,177,000	657,400

